

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9. 6 . 23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9. 7 .27.

다. 상정일자 : 1999. 7. 28 제6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에 부응하고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내용으로 반장위촉 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반장위촉 자격의 완화(제2조)

- “관할구역안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”로 되어 있는 거주기한을 폐지하고 위촉연령인 20세이상 60세이하”의 상한연령을 삭제

4. 검 토 의 건

가. 먼저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

- 평창군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반장의 자격요건을 “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”로 규정하는 있음. 본 위촉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규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나. 조례개정시

- 농촌인구 고령화와 반장을 기피하는 우리군 현실을 고려해 볼때 조례개정을 통한 반장자격 완화는 현실성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됨.